국외여행(기간연장) 허가 신청 안내

❑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.

❑ 병역법상 2017년 **현재 24세인 사람(1993년 출생자)**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**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**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【허가기준 및 출원기관】

▢ 허가기준

○ 국외여행(기간연장)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역이행안내 → 국외여행·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

▢ 출원기관

○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(대사관 또는 총영사관)

○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

- 병무민원포털 → 국외여행·국외체재 → **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 신청**
- '국외이주' 또는 '국외취업'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

☞ 병역법상 연령을 표시한 경우 "○○세부터"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, "○○세까지"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

❑ 만약, 25세 이후에도 **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·거주할 경우에는**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**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**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(병역법)】

○ **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(제94조)**

○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(제76조)

○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(병무청 홈페이지) 공개(제81조의2)

○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(제71조)

※ 여권발급 제한(여권법 제12조)

❑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>

구 분	업 무 담 당		
	24세 이전 출국사유 연기자처리	국외여행 (기간연장)허가	국외이주자 관리
서울지방병무청	02)820-4410	미국, 호주지역 02)820-4383 기타지역 02)820-4382	02)820-4331 02)820-4333 02)820-4335
부산지방병무청	051)667-5324	051)667-5356	051)667-5324
대구 · 경북지방병무청	053)607-6238	053)607-6351	053)607-6352
경인지방병무청	031)240-7234	031)240-7296	031)240-7234
광주 · 전남지방병무청	062)230-4259	062)230-4259	062)230-4305
대전 · 충남지방병무청	042-250-4236	042)250-4259	042)250-4236
강원지방병무청	033)240-6234	033)240-6275	033)240-6234
충북지방병무청	043)270-1233	043)270-1259	043)270-1233
전북지방병무청	063)281-3293	063)281-3257	063)281-3293
제주지방병무청	064)720-3234	064)720-3253	064)720-3234
경남지방병무청	055)279-9231	055)279-9315	055)279-9231
인천병무지청	032)454-2234	032)454-2292	032)454-2292
경기북부병무지청	031)870-0325	031)870-0257	031)870-0325
강원영동병무지청	033)649-4233	033)649-4258	033)649-4233